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유 지 선
소방방재청 재해경감팀 시설사무관

I. 총설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민간기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 사업활동 유지를 위한 예방·대비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발생시 영세 기업은 도산되는 등 매년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¹⁾ 이는 화재로 인한 피해액의 10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기업의 피해 경감을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며, 기업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정부재정 여건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영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반면,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재난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관리 표준체계(ASIS, NFPA)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자금 지원 등 다수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시민비상대처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에 의하여 기업의 사업연속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 해당 지방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재난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한 활동이 국제 비즈니스 사회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평균피해액은 연간 1,200억 원, 대형 태풍시에는 6,000억 원에 이른(중소기업청 조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기업이 스스로 재해경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제정 추진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0호로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I. 법률 세부내용

(표 1) 법률 구성

제1장 총 칙	제정목적 및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제2장 재난관리표준	재난관리표준 제정·운용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우수기업 추천 심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4장 우수기업 지원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
제5장 재해경감활동기반조성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6장 보 칙	업무해경감협회 설립, 포상 등

1.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3조).

기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법 제2조).

-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 재난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 재해경감활동계획 : 기업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복구계획
- 재난관리표준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재해경감 우수기업 : 법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2. 재난관리표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라 한다)이 작성·고시하는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법 제5조).

-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업무대행

3.1 우수기업의 인증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본부장은 평가 후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법 제7조).

중앙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법 제9조)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으며,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기업재난관리자]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법 제10조).

3.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 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1조).

기업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소정의 기술인력 확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2조).

(표 2)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

기술인력		전공분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로 다른 분야의 2명 이상		토목 건축 기계 방재 산업안전 화공 전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전공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토목 건축 기계 방재 산업안전 화공 전기
4)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 이상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영 회계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를 취득한 자	
3) 전공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작응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작응용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자 전산 전자통신
3) 전공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전공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경영·전략기획·생산관리·인력관리·안전관리부문의 컨설팅 업무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 2명 이상	

주1) 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표2>에 명시된 기술인력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실시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주2)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확보된 기업재난관리자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다른 계획 수립 대행자의 전문기술인력이어서는 아니 된다.

4.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4.1 가산점 부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9조).



4.2 보험료 할인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 할 수 있다(법 제20조).

4.3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1조).

4.4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며,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22조).

4.5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 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23조)

5. 정부의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등

5.1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소방방재청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법 제24조).

5.2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법 제25조),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법 제26조).

5.3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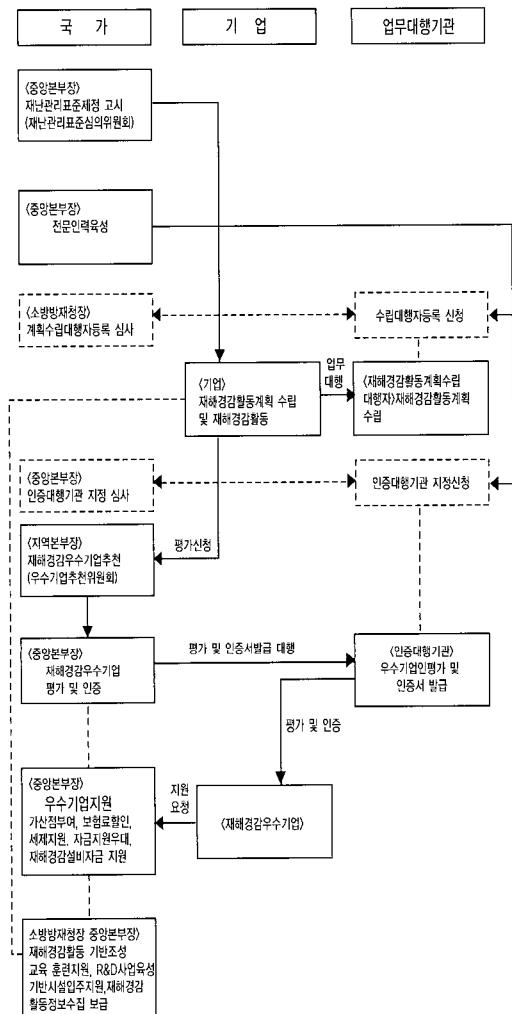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법 제27조),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법 제28조).

6. 보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재해경감협회를 설립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30조).

III. 법률에 따른 제도흐름 및 기대효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제도의 시행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제도 흐름도

본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활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방재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재난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관리역량의 제고는 경제적 손실 감소로 직결되어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언

기업의 사업연속성확보를 위한 활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업에만 도입되어 있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법에 근거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및 우수기업 인증 대행 인력 등 전문인력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서 작성지침을 배포하여 작성방향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